

2023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도내 지역서점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『2023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』을 공고하오니, 도내 서점 및 출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 4. 5.

(재)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3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3. 4 ~ 12월
- 사업비: 80백만원 ※행정비용 포함
- 사업내용: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, 출판 콘텐츠 제작·발간 등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
- 지원분야: 2개 분야(서점/출판)
- 지원규모: 10건 내외(과제별 5백만원~최대 1천만원 차등지원)
- 지원대상: 도내 지역서점 및 출판사
- 지원내용
 - 지역 서점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활동 지원(북콘서트, 축제 등)
 - 지역에 기반한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·발간 및 홍보활동 지원

2

지원분야 및 자격요건

□ 지원자격

- (서점) 경남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지역서점
- (출판) 도내 출판사

※ **지역서점**: 경남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 지역서점(온라인대형 프랜차이즈 서점 및 서적 유통사 제외)
 ※ **출판사**: 출판법 제9조에 따른 출판업신고증 소유자

지원제외 대상

-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
- 동일과제 중복지원 금지(신청일 현재 중앙 또는 경남도 지자체, 각 시군 등으로부터 동일과제를 지원 받아 진행 중인 사업자)
- 경상남도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참여 제한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
 ※ 사업선정 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납 조치
- **직전 2개년도 연속 해당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자**
 ※ 2021년~2022년 연속지원 사업자(서점/출판사)는 지원 불가

□ 지원분야

분야	유형	세부사업유형
서점	행사네트워크	-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· 북콘서트, 저자초청강연, 지역서점 축제, 골목 축제 등 지원 · 독서동아리, 토론회, 컨퍼런스,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· 기타 각종 서점 관련 온·오프라인 문화활동 지원
	홍보·마케팅	- 지역서점 홍보·마케팅을 위한 기획사업 및 전시 운영 지원 - 기타 서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동 지원(북큐레이팅 등)
출판	도서발간	- 역사, 문화자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·발간 지원
	홍보·마케팅	- 지역 출판물(출판사) 홍보·마케팅을 위한 기획사업 및 전시 운영 지원 - 기타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동 지원
	행사네트워크	-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· 북콘서트/축제, 작가양성 과정, 지역콘텐츠 제작 등 지원 · 독서동아리, 토론회, 컨퍼런스,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등

3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: 2023. 4. 5.(수) ~ 4. 26.(수) 14:00 <22일간>
- 접수기간: 2023. 4. 17.(월) ~ 4. 26.(수) 14:00 <10일간>
- 접수방법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
 - 지원신청서 1부 (진홍원 서식)
 - 사업자등록증 1부
 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
 - 출판사 신고확인증 1부 ※출판 분야
 - 출간예정 도서 원고(또는 기획안) 1부 ※도서출간 유형
 - 발표자료 1부 (pptx 또는 pdf 파일)
 - 기타 자료 (자유 첨부)
 - ※ 서점/출판경력, 시설정보, 저자 포트폴리오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 가능

4 주요일정 및 평가기준

○ 주요일정(안)

주요일정	일정(예정)	추진내용
서류/발표평가 ↓	2023.5.3.(수) /경남콘텐츠코리아랩(예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단체 PT발표 및 평가 ◦ 심사절차에 따른 지원팀 선정
워크숍 및 네트워킹 ↓	2023.5.9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선정단체 보조금 지침 교육 ◦ 협력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
이행약정체결 및 교부 ↓	2023.5월 2~3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최종사업계획 수립 ◦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◦ 서면이행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
사업수행 및 현장모니터링 ↓	2023.5~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◦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점검
성과공유회 ↓	2023. 11월(예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결과 공유 및 네트워킹 ◦ 성과자료집 배포 및 컨설팅
사업결과보고 및 정산	2023.11~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(~11/30) ◦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반납

○ 평가기준(안)

분야	평가 항목	내 용	배점
서점	사업타당성(50)	사업 기획 및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의 우수성	30
		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
	사업추진역량(40)	대표의 서점 운영 경력 및 문화활동 관리 역량	20
		지역 연계 독서 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	20
	사업예산의 적정성(10)	사업 예산 책정의 적정성	10
	합 계		
출판	사업타당성(50)	사업기획(출간·제작 콘텐츠)의 우수성 및 독창성	20
		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(출간물 내용의 완성도)	30
	사업추진역량(40)	출판물 발간·제작 활동 실적 및 구체적인 홍보 계획	20
		주요 참여인력의 사업추진(도서출간/행사운영) 역량	20
	사업예산의 적정성(10)	사업 예산 책정의 적정성	10
	합 계		

5 기타사항

○ 관련기준

-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(재)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

○ 일반사항
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 책임임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·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

-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
-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은 편성될 수 없음

-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은 신청인 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나, 경상남도 와 진흥원의 홍보 또는 공익의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

-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, 초상권 등 모든 분쟁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관리는 신청단체에게 있음

- 선정·지원 후 승인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변경 또는 예산변경을 승인없이 추진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음

- 선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 중도 포기, 중단 또는 제작기간 내 미완료, 지원금 정산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제한 조치될 수 있음

6 일정 및 문의처

□ 향후일정

○ 접수결과 및 심사일정 공지 (진흥원 홈페이지) : 2023. 5월 중

□ 문의처

○ 사업문의: 콘텐츠산업본부 대중문화산업팀 055-230-8824
(E-mail: dabin@gcaf.or.kr)

○ 신청시스템 문의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577-8751

<2023 경남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지원사업>

목	세목	용도	비고
인건비	강연비	- 저자 북토크(북콘서트), 강연 등의 사례비	· 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필수 · 교통비/숙박비 등 강사료에 포함 · 지원금으로 대표자 및 내부직원 인건비 편성 불가
	원고료	-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의 원고료	
	전문가 활용비	- 감수, 교정, 통번역 등 도서출간에 필요한 전문가 사례비 - 자문 및 컨설팅 수당 - 사진촬영, 공연팀, 진행자 인건비 등 기타 사례비	
	기간근로 보수	- 행사 보조요원, 사업보조 단기근로자 운영비	
일반수용비	인쇄비	- 포스터 제작, 홍보물품 출력비 - 각종성과물 및 교육 자료 인쇄비 - 도서발간을 위한 인쇄비 등	· 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(단 임차가 불가능하고 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의 경우 담당자 협의 후 편성)
	재료비	-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타물품 구입비 -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료구입비 - 행사 운영을 위한 참가자 다과비	
	도서 구입비	- 행사운영 시 사용하는 도서구입비 -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한 도서구입비	
행사홍보비	홍보물 제작비	- 행사(사업)운영을 위한 간판, 상패 등 제작비 - 홍보·마케팅을 위한 홍보물품(굿즈) 제작비	
	광고비	- 매체홍보, SNS 유료 프로모션 비용 등	
	일반 용역비	- 전문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한 대행비 (홍보영상제작, 광고마케팅, 무대디자인 등)	
임차료	임차료	-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, 건물 등의 임차료 - 행사 진행에 따른 각종 물품 대여비(책상, 장비 등)	
업무추진비	회의비	-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회의식비	· 총 사업비의 5% 이내 책정 가능 · 교통비는 실비기준 인정 (자차 운행 시 시외버스요금 기준)
	교통비	- 필수행사 참여를 위한 진행인력의 교통비 (진흥원 성과공유회 포함)	

□ 불인정 예산 항목

1. 주류 구입 불가, 사업과 관계없는 식사비 지원 불가
2. 인건비는 단체의 대표, 내부 직원이나 가족 대상으로 지급 불가
3. 가구(의자, 책상, 인테리어 소품), 전산기기 및 전산소모품(프린터, 프린터 잉크, 배터리 등), 의복, 침구 등 자산 및 개인용품으로서 소장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불인정
4.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(주차비,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전화요금, 계좌이체 수수료), 과태료 불인정
5. 이 밖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불인정